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00

발의연월일: 2025. 1. 2.

발 의 자: 강선우 · 임오경 · 박해철

김윤덕 · 서미화 · 조승래

김교흥 • 임호선 • 윤호중
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료계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의료, 특히 필수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,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.

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붕괴에 대응하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.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구강 건강과 관련한 필수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치과병원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진료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자 함.

또한 국립대학치과병원 관리 감독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며

운영 예산 국고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의료 역량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(안 제 1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이"를 "보건복지부장관이"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7조의 제목 "(출연금 등)"을 "(출연 또는 보조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보조하고,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·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"를 "보조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·사용 및 관리"를 "제1

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 · 관리"로 한다.

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 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0조 전단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1조제1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2조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 제24조제2항 중 "교육부장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행한 행위 및 교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
	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대학치
	과병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자
	율성을 바탕으로 교육·연구·
	진료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,
	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민
	에게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
	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
	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제4조(정관) ①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	2
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	<u>보건복지부장관</u>
받아야 한다.	
제9조(임원) ① (생 략)	제9조(임원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	2
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	
장(이하 "원장"이라 한다), 관	
련대학의 치과대학장(치의학전	
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) 및 대	
학병원장, 기획재정부장관, 교	
육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	
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	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	

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,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 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 장 또는 부지사(이하 "당연직 이사"라 한다) 및 이사회의 추 천으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, 당연직 이사 외 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 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.

-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
- ④ ~ ⑥ (생 략)
- 제12조(치과병원장) ①·② (생략)
 -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.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~ ⑦ (생 략) 제17조(출연금 등) ① (생 략)

<u>보건복지부장관이</u>
3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치과병원장) ①·② (현행
과 같음)
③
<u>보건복지부장관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7조 <u>(출연 또는 보조 등)</u> ①

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 하고,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 설・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,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
 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·사용
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
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(1 6 F E E)
n 2
<u>보조</u>
<u>한다</u> .
③ 정부는 치과병원의 사업과
운영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
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
른 출연, 보조 및 지원의 기준
<u>•관리</u>
제20조(사업계획 등 보고)
-보건복지부장관
·
•

(청해고 가으)

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 원
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
작성하여 「공인회계사법」 제
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
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
•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
개시 후 2개월 이내에 <u>교육부</u>
<u>장관</u>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() ()] ¬})

② (생 략)

제22조(감독) <u>교육부장관</u>은 치과 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 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제24조(과태료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·징수한다.

제21조(결산서의 제출 등) ①
니키 H 키 H
<u>보건복지부</u>
<u> 장관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감독) 보건복지부장관
제2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
<u>보건복지부장관</u>